

「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7년 6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우진석·김익수·윤서규·이갑선·허 복·이정임
임춘구·김영호·박순이 의원(9인)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2007년 6월 14일

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우진석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·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『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』의 제명이 전·현직 의원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어 그 제명을 『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』로 하고
- 또한 의정회가 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『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』를 『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』로 제명 변경
- 의정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하고 의정회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<제2조제2항 신설>
- “의정동우회”를 “의정회”로 개정 <제2조 ~ 제8조>
-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목적사업 추가 <제3조>

라. 참고사항

- 타 시군 의정회 개정 현황 : 경주시의회(2006.10.16 개정)

3. 검토보고 요지 : 전문위원 박경찬

- 본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『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』의 제명이 전·현직의원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어 그 제명을 『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』로 또 각 조항의 “의정동우회”를 “의정회”로 변경 하고,
- 의정회 설립을 법인화 하는 등 의정회 사업을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,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등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
- 개정 이유는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·조사하기 위한 근본취지를 보완·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생략